

충청북도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3월 16일

- 회부일자 : 1995년 3월 16일

3. 개정이유

'95년 1월 5일 개정공포된 건축법중 개정법을 부칙에 의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 관계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코자 함.

4. 주요골자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충청북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제14조의 제목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건축물의 높이제한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1조 동법 제53, 동법 제59조"로 함.

5. 검토의견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시 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확대하여 건축법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동법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동법 제59조(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용이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